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1.

기획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임미연 의원 외 5명(황국주, 도하석, 장호섭, 이진환, 김기열)
- 발의일자: 2025. 11. 14.(금)
- 회부일자: 2025. 11. 14.(금)
- 상정 및 의결: 제31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2025. 12. 1.)

2. 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과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안 제6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안 제22조)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안 제23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안 제24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1. 14. ~ 11. 26.)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기부금 모금 현황은 2023년도 6천 6백만원, 2024년도 8천 5백만원, 2025년 9월말 현재 1천 6백만원 등 총 1억 6천 7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안 제22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교육 및 각종 행사,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구 행사 초청, 구 홍보 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표, 감사 서한문 등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사업 추진, 기부자에 대한 예우,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기부금 모금 확대와 제도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우리 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 9월말 현재	비 고
건 수	1,956	954	835	167	
기부액	166,751	65,651	84,561	16,539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